##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74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대표발의자<br>(제출자) | 발의일<br>(제출일) | 경 과  |
|-----------------------------------|----------------|--------------|--|
| 해양환경관리법<br>일부개정법률안<br>(제2201585호) | 어기구의원          | 2024.7.10.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26.)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             |
| 해양환경관리법<br>일부개정법률안<br>(제2203862호) | 임호선의원          | 2024.9.1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br>(2024.11.12.)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br>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br>회부 |

-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21.)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 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를 "해양환경의"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를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 ~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       | 4                   |
| 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        |                     |
| 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 <u>경</u>            |
|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        | 우 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
| 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       |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    |
|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        | 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     |
| 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       | 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
| 다.                     |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     |
|                        |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 · ②    |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 • ②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3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u>해양환경의</u>        |
| <u>해양환경의</u> 보전·관리 및 해 |                     |
| 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        |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     |

<신 설>

는 <u>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u>. <u>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u>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 <u>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u>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